

시설공사적격심사 해설

최 두 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번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제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 6 개정·공포된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금지급 관행이 이루어져 업체의 자금난 악화 및 부실시공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성실한 업체의 수주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II. 개선방향

개선의 방향은 공사규모에 따라 크게 5 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100억이상 대형공사는 품질확보와 건설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우위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중간규모(100억미만~10억이상) 공사는 경쟁력있고 성실한 중견업체의 수주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부실업체의 입찰참가시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여 입찰과정의 부정 및 부실시공을 방지도록 하

I.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배경

그동안 적격심사낙찰제도가 변별력이 부족하여 우량업체를 선별하지 못하고 『운』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97 건설업등록 요건 완화로 Paper Company 등 무자격업체가 난립하여 성실업체 수주기회가 감소되었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 대

< 2002 자체발주공사 : 총 69,064건, 14조 2,627억원 >

- ▶ 1000억원 이상 : 22건 1조 7,605억원(12%)
- ▶ 10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 11건, 5,951억원(4%)
- ▶ 5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 25건, 6,621억원(5%)
- ▶ 3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 89건, 1조 2,908억원(9%)
- ▶ 100억원 미만 : 68,917건, 10조 9,542억원(70%)

고 있다.

셋째, 10억미만 소규모 공사는 가능한 모든 업체에 수주기회를 고르게 확대하되 Paper Company 등 무자격업체에 대한 납립방지대책을 강구하였다.

넷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공사대금 지급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있다.

III. 주요개선내용

1.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기술 경쟁력 위주 개선

현행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중 100억원

이상 P·Q(Pre-qualification) 대형공사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대상공사는 조달사업 법령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토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500억원 이상 공사는 2004. 1. 1부터 최저가 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P·Q 공사(22개 공종) 및 대안입찰, 일괄입찰(일명 턴키방식)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만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P·Q를 실시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그동안 시공경험이나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고 일부 평가항목은 모든 업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식적 기준으

<100억원 이상 공사의 배점기준>

(단위 : 점)

구 분	계	시공 경험	경영 상태	기술 능력	하도급 계획	자재 및 인력조달	시 공 여유율	신인도	입찰 가격	최 저 낙찰율 (%)	통과 점 수
1000억이상	100	13	13	14	12	14	4	±2	30	72.9	85점
1000억미만										77.9	90점 (300억이상)
100억이상	100	12	13	15	12	14	4	±2	30	82.9	95점 (100억이상)



현 행(100점)	개 선(100점)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능력(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경험 : 13점 - 기술능력 : 14점 - 경영상태 : 1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능력(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경험 : 15점 - 기술능력 : 15점 - 경영상태 : 10점 	<p>+2점 +1점 △3점</p>

로 업계의 기술개발 추진 및 유도가 미흡하고 상대적으로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영상태평가항목의 배점을 축소하고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공경험 및 기술력우위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였다.

둘째, 1천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공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1천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를 500억원을 기준으로 분리하고 배점기준을 차등화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도록 하였다.

셋째,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실질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종전 평가항목 중 설비 및 장비보유상황,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

현 행(100점) 1,000억미만~100억이상	개 선(100점) 1,000억미만~500억이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능력(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경험 : 12점 - 기술능력 : 15점 - 경영상태 : 13점 ○ 하도급계획 적정성(12점)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12점) ○ 시공여유율(4점) ○ 입찰가격(30점) ○ 신인도(±1 ·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능력(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경험 : 13점 - 기술능력 : 16점 - 재무상태 : 11점 ○ 하도급 계획 적정성(12점)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12점) ○ 시공여유율(4점) ○ 입찰가격(30점) ○ 신인도(±1 · 2점) 	<p>+2점 +1점 +1점 △2점</p>



500억 미만 100억 이상 공사
현행 1천억 미만 100억 이상 공사 배점기준과 동일

현 행(35점)	개 선(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보유상황(20점) ○ 설비 및 장비보유(4점) ○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특수 공법 및 기술보유상황(5점) ○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축적정도(2점) ○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 개발비 투자비율(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보유상황(24점) ○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2점) ○ 시공평가결과(3점) ○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정도(2점) ○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 개발비 투자비율(4점)

〈신기술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 신기술개발 · 활용실적(2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 · 고시되어 활용한 실적
※ 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는 신기술은 1점 배점
- 시공평가결과(3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평가
 - ①품질관리 ②공정관리 ③하도급관리 ④기술개발
 - ⑤안전관리 ⑥환경관리 ⑦현장관리 ⑧부실별점

보유상황의 평가항목은 사실상 모든 업체
가 만점을 받을 수 있어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모두 삭제하고
신기술개발 · 활용실적(2점), 시공평
가결과(3점)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이중에서 신기술개발 · 활용실적 평가항
목은 건설업계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 기준 시행일 1년 이후부터 시행하
되 최근 1년간 개발 · 활용한 실적으로 평
가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기회를 부
여하기 위하여 500억원이상 공사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시공경험 축적정도, 기술개

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
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적용시기를 별
도로 정하여 통보하기 전까지는 만점으로
평가하며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는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시행시기를 정하기
전까지는 만점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그동안 시설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중 경
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평가항목, 평가시점, 평

〈현행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의존도 ④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자산/유동부채) (차입금/총자산) (영업이익/이자비용)
⑤매출액영업이익률 ⑥매출액순이익률 ⑦총자산순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당기순이익/매출액) (당기순이익/총자산)
⑧영업현금흐름비율 ⑨자산회전율 ⑩신용평가등급
(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⑪감사인의견 ⑫영업기간

○ 추정가격 100억 이상 1,000억 미만 공사

-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 의존도 ④이자보상배율
⑤매출액영업이익률 ⑥매출액 순이익률 ⑦총자산 순이익률
⑧영업현금흐름비율 ⑨자산회전율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

-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매출액순이익률
④매출액영업이익률 ⑤자산회전율

○ 50억원 미만 공사

-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평가방법

: 상대평가방식

○ 평가항목별로 업체 전체 평균비율(欲) 대비 해당 업체비율을 5등급화(A~E등급)

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일부 논란이 있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경영상태평가는 최근연도 연말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평가기준일 대비 최소 6개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시점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한된 경영상태 지표에 따라 정부평가와 시장평가의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이 우량한 건설업체가 법정관리, 회의,

워크아웃업체에 비하여 경영상태 점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또한 업체평균치에 의한 상대평가로 수시결산제도를 악용하거나 분식회계 등으로 경영상태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하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

〈공사규모별 신용평가등급별 배점 및 평점(안)〉

신용평가등급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공사
회사채	기업어음		
AAA		33.0	33.0
AA+, AA0, AA0-	A-	32.0	32.0
A+	A2+	31.6	31.6
A0	A20	31.3	31.3
A-	A2-	31.0	31.0
BBB+	A30	30.5	30.5
BBB0	A30	30.3	30.3
BBB-	A3-	30.0	30.0
BB+, BB0	B+	28.7	28.7
BB-	B0	28.0	28.0
B+, B0, B-	B-	26.0	26.0
CCC+ 이하	C 이하	24.0	24.0

사발주시에는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점수화하는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고, 단계적으로 신용평가대상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신용평가를 받는 업체가 소수인점을 감안하여 현행 경영상태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업체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식을 30억이상 공사와 30억원 미만 공사를 구분하여 달리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즉, 30억원 이상 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업체 간 경영상태에 차이가 있어도 자본력 등이

큰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우량업체 선별에 한계가 있었다.

〈예시〉

$$\text{A업체 } 60\%, \text{ B업체 } 40\% \text{로 참여한 경우} \\ \text{부채비율 점수 산정} \\ \frac{\text{A부채총계} \times 60\% + \text{B부채총계} \times 40\%}{\text{A자본총계} \times 60\% + \text{B자본총계} \times 40\%} \div \\ \text{전국 평균부채비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를 합산도록 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구 분	인정범위	인정기간	평가방법	만점기준
실적제한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 물량으로만 인정 ▶ 인정규모(크기)는 실적제한규모와 같거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	$\frac{\text{실적}}{\text{평가기준}} \times 100$ <p>* 평가기준은 발주기관에서 70%까지 하향조정 가능</p>	천억원 이상 120% 천억원 미만 100%
실적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동일 업종 ▶ 금액으로 인정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개년 실적누계 (기성실적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 이상 $\frac{3\text{년간 실적}}{\text{추정가격} \times 2} \times 100$ ▶ 50억 미만 $\frac{3\text{년간 실적}}{\text{추정가격}}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200% ▶ 20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0억 : 180% - 10억 미만 : 50%

3. 시공경험 평가방법 개선

현행 시설공사의 시공실적의 평가는 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와 ②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100억 이상 공사의 만점기준 비율을 상향조정〉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억원 이상 공사 : 120% - 1천억~5백억원 이상 : 100% - 5백억원~100억원 이상 : 100% - 100억원 미만 공사 : 100%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억원 이상 공사 : 200% - 1천억~5백억원 이상 : 200% - 3백억원~100억원 이상 : 200% - 100억원~ 50억원 이상 : 200% - 50억원~ 20억원 이상 : 200% - 20억원~ 10억원 이상 : 180% - 10억원 미만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억원 이상 공사 : 130% - 1천억~5백억원 이상 : 120% - 5백억원~100억원 이상 : 110% - 100억원 미만 공사 : 100%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억원 이상 공사 : 250% - 1천억~3백억원 이상 : 230% - 3백억원~100억원 이상 : 220% - 100억원~ 50억원 이상 : 200% - 50억원~ 20억원 이상 : 200% - 20억원~ 10억원 이상 : 180% - 10억원 미만 : 70%



〈100억 미만 10억 이상 실적제한공사 평가시 『동일실적』과 『업종별실적』을 혼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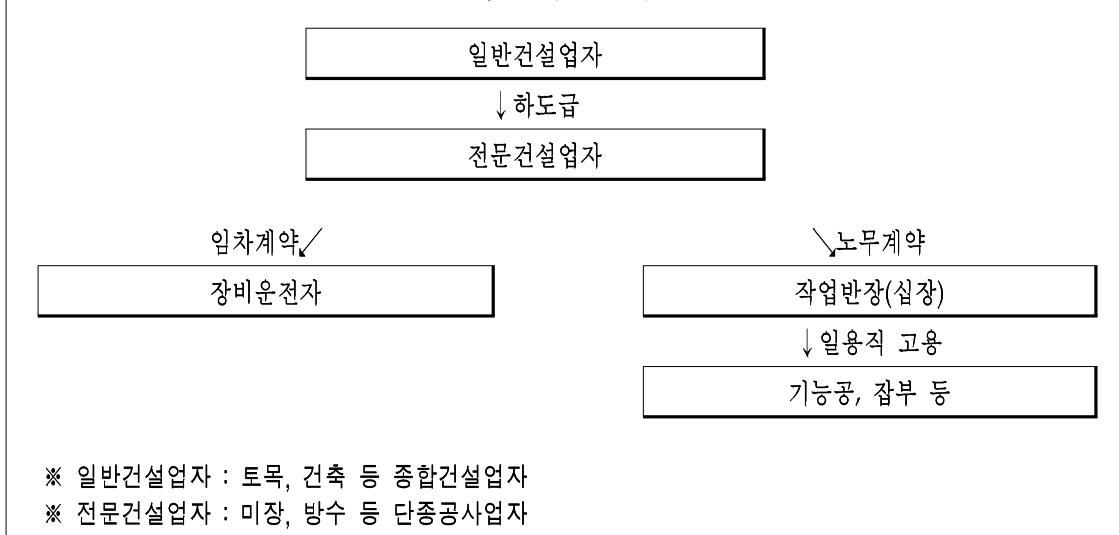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미만 10억이상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미만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5%) -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5%)

현행 평가방법은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의 실적평가방법이 동일하여 공사금액에 따른 변별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운』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또한 실적제한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시 동일실적만 인정토록 하고 있어 유사실적은 “0”점 처리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 사례 : 4차선 도로공사 발주시 2차선 도로실적 불인정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00억원 이상 공사의 만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실적제한 공사의 실적평가시 동일실적과 업종별 실적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 일반적인 하도급 구조 >



종 전

- 하도급비율(5~4점)
- 의무하도급 비율 대비 지역업체
하도급비율(2~1점)
- 하도급 예정금액 대비 하도급업자
수급 비율(5점))



개 선

- 하도급비율(4~3점)
- 의무하도급 비율 대비 지역업체
하도급비율(2~1점)
- 하도급 예정금액 대비 하도급업자 수
급비율(5점))
- 최근 1년이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1점)
 - 총 발주공사 건수 대비 하도급 직불
건수가 10% 이상 : 1점
 - 총 발주공사 건수 대비 하도급 직불
건수가 10% 미만인 경우 : 0.5점

4. 하도급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

현행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거래를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쟁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논란이 있으나 건설업 전체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68.8%)이 크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향상 및 공정거래 차원에서 하도급거래내용 일부를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부정부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지급시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원도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자는 향후 지속적인 거래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서는 하도급업자에 대한 현금지급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처,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상호협의를 통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촉진을 위하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하도급직접지급실적이 많은 업체에 대하여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배점을 정하

종 전

-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triangle 1점)
- 서면경고 2회 이상 처분(\triangle 2점)
-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는자(\triangle 3점)
- 고의 · 과실로 공무원을 징계처분 받도
록 원인제공자(\triangle 3점)



개 선

- 최근 1년 이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는자
 - 1회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자(\triangle 1점)
 - 2회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자(\triangle 2점)
 - 3회이상 처분사실이 있는자(\triangle 3점)

종 전(10억이상)
○ 최근 1년 이내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가산점 부여(+3.0~+0.5점)

개 선(50억 이상)
○ 우수건설업자의 신인도 평가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최근 1년간 “건설업자 간상호협력관계”를 평가, 실적이 우수한 자에 가산점 부여 (+3.0~+0.5점)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

- 평가항목
 - ①공동도급실적(10)
 - ②하도급실적(35)
 - ③협력관계의 안정성(10)
 - ④협력업자육성(35)
- 평가기간 : 1년간의 활동실적을 매년 1회 평가
- 평가자 : 건설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 위탁평가)

여 하도급대금직불을 촉진토록 하였다.

또한 50억원 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평가사례가 거의 없는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한편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우수건설업자 신인도평가항목에 대하여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로비 등 폐해가 심각하여 동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다.

5.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강화

지난 '99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낙찰제도

가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된 이래 적격심사과정에서 허위설적제출 등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부정행위가 발생되어 왔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발주자의 재량행위를 악용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금번 적격심사기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체의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이외에 입찰참여시 일정기간(2년) 동안 감점($\Delta 1$ 점) 처리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차단도록 하였다.

동 개선내용은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 제재대상 〉

- ①부실시공자 ②담합행위자 ③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④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이행과 관련 뇌물제공자
- ※ 위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자

현 행
○ 경영상태 10점
○ 가격 90점
○ 특별신인도(+2점) - 당해공사금액 대비 실적 1배 소지자



개 선
○ 경영상태 9.8점
○ 가격점수 90점
○ 접근성 : 0.2점 - 시군지역 시군지역업체 : 0.2점
○ 특별신인도(+2점) - 당해공사금액 대비 1배 소지자

적용토록 하고 있다.

6. 2억미만 소규모 공사의 평가방법 개선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2억원미만 소규모 공사가 전체 경쟁입찰 공사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공사 발주시에는 사실상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1건 발주시 4~5백개 업체가 응찰하는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적격한 업체라도 원거리 외지업체가 낙찰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이동에 따른 비용상승을 이유로 당해 시·도지역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미만 공사의 경쟁입찰시에는 당해 시·군소재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개선하였다.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발주 공사 관련 업종소지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동 항목을 평가하지 않도록 동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7. 기타제도 개선사항

현행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술자 보유상황에 대한 평가방식을 입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여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전출입하는 공백기간동안 기술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신인도평가시 벌금형이상 감점적용시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기간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행능력 평가시 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상 일정금액 미만을 절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평가시에 입찰참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사금액』이 낙찰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절사된 금액 까지 인정토록 하였다.

한편, 시공능력이 없는 지역업체가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능력에 맞는 시공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시공능력을 3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토록 개선하였다.